## 용인시 과 · 소업무 지도담당 규정

제정 2005. 10. 5 훈령 제206호 개정 2006. 10. 13 훈령 제241호 2006. 12. 29 훈령 제247호 2007. 7. 1 훈령 제260호 2008. 12. 29 훈령 제276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 본청의 국장으로 하여금 과·소의 행정을 종합지 도·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담당) ① 국장의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은 별표와 같다.
  - ② 과·소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도책임을 진다.
- 제3조(지도감독) 국장은 과·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  - 1. 전 직원의 근무상황, 지휘감독
  - 2. 각종 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
  - 3. 일제지도를 요하는 사항과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
- 제4조(결재 또는 보고) 각 과·소장 및 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결재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- 1. 과 · 소장 전결사항외의 중요한 사항
  - 2. 과 · 소장 전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
  - 3. 기타 과·소 운영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시행에 필요한 사항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6. 10. 13 훈령 제241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규정

부칙〈2006. 12. 29 훈령 제247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7. 7. 1 훈령 제260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. 12. 29 훈령 제276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〈개정 2006. 10. 13, 2006. 12. 29, 2007. 7. 1, 2008. 12. 29〉

# 용인시 과 · 소업무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

### 1. 지도담당

담당국장	지 도 담	당
	담당관·과	직속기관・사업소
자치 행정국 장	행정과, 정책기획과, 재정법무과, 회계과, 세정과, 정보통신과	
주민생활지원국장	주민생활과, 복지위생과, 가족여성과, 문화관광과, 교육체육과	시립도서관, 여성회관
산업정책국장	기업지원과, 농축산과, 산림휴양과, 자원관리과	
도시 주택국 장	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주택과, 건축과, 도시공원과	
건설교통국장	교통과, 도로과, 하천과, 환경과 재난안전과	차량등록사업소

<sup>※</sup> 공보관, 대외협력관 및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.

### 2. 협조담당

구 분	사 업 소 명	비고
주민 생활지 원국 장	처인구・기흥구・수지구 보건소	
산업정책국장	농업기술센터	
건설교통국장	상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, 건설사업단	